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7일, 이상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희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훈령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 훈령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매우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훈령에서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규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기 제정된 운영규정이 출연(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출연(연)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운영규정에 기속되는 만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규정의 개정 사실 또한 통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영규정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된 사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운영지침에 대한 출연(연)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지침 개정 사실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도록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연구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운 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후단 신 설> 1. 조직 운영과 정 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 행과 자금 운영 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 ----- ----- ----- ----- ----- ----- ----- ----- ----- . 운영지침 을 개정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 6. (개정안과 같음)

	<u>영 내용에 대한</u> <u>평가에 관한 사</u> <u>항</u> 6. <u>그 밖에 연구기</u> <u>관의 운영과 관</u> <u>련하여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사</u> <u>항</u>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
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
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1.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u> <u>2.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u> <u>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u> <u>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u> <u>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